**「유산·증여세법」**

[법률, 2017.5.26., 개정]

□ 개요

 대만 「유산·증여세법」은 대만 국경 안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및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경 밖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국적을 영유하지 아니하거나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973년 1월 26일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재정부가 소관한다. 2017년 5월 26일 제13차 개정되었고 2017년 6월 14일에 공포되었으며, 총 6장 59조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1. **總則**

第一條 (遺產稅之客體)第二條 (無人承認繼承之遺產稅)第三條 (贈與稅之客體)第三條之一 (喪失國籍者之課稅)第三條之二 (遺產稅之課徵)第四條 (名詞定義)第五條 (視同贈與)第五條之一 (贈與稅之課徵)第五條之二 (不課徵贈與稅之情形)第六條 (納稅義務人－遺產稅)第七條 (納稅義務人－贈與稅)第八條 (遺產贈與稅之保全)第九條 (境內外財產之認定)第十條 (估價原則)第十條之一 (遺產稅價值計算)第十條之二 (贈與稅價值計算)第十一條 (國外財產遺產稅與贈與稅之扣抵)第十二條 (貨幣單位)第十二條之一 (金額項目)1. **遺產稅之計算**

第十三條 (稅率)第十四條 (遺產總額範圍)第十五條 (視同財產)第十六條 (不計入遺產總額)第十六條之一 (不計入遺產總額)第十七條 (扣除額)第十七條之一 (配偶剩餘財產差額分配請求權)第十八條 (免稅額)1. **贈與稅之計算**

第十九條 (稅率)第二十條 (不計入贈與總額)第二十條之一 (不計入贈與總額之財產)第二十一條 (扣除額)第二十二條 (免稅額)1. **稽徵程序**

第一節 申報與繳納第二十三條 (遺產稅之申報)第二十四條 (贈與稅之申報)第二十四條之一 (訂定、變更信託契約日為贈與行為發生日)第二十五條 (合併申報)第二十六條 (延長申報期間)第二十七條 (刪除)第二十八條 (通知申報)第二十九條 (調查估價)第三十條 (延期或分期繳納)第三十一條 (刪除)第三十二條 (刪除)第三十三條 (對未申報者之調查核定)第二節 刪除第三十四條 (刪除)第三十五條 (刪除)第三十六條 (刪除)第三節 資料調查與通報第三十七條 (死亡通報)第三十八條 (刪除)第三十九條 (搜索扣押)第四十條 (會同點驗登記)第四十一條 (證明書之核發)第四十一條之一 (同意移轉證明書)第四十二條 (移轉登記時通知檢附證明書)1. **獎懲**

第四十三條 (舉發獎金)第四十四條 (未依限申報之處罰)第四十五條 (短漏報稅之處罰)第四十六條 (故意詐欺逃稅之處罰)第四十七條 (罰鍰之限制)第四十八條 (稽徵戶籍人員違法之處罰)第四十九條 (刪除)第五十條 (稅前分割遺產等刑責)第五十一條 (逾期繳納之處罰)第五十二條 (未驗證而受理之處罰)第五十三條 (刪除)1. **附則**

第五十四條 (刪除)第五十五條 (施行細則)第五十六條 (書表格式之製定)第五十七條 (刪除)第五十八條 (補充法)第五十八條之一 (稅收實質損失)第五十八條之二 (稅課收入撥入長照服務之特種基金)第五十九條 (施行日) | 1. **총칙**

제1조 (유산세의 객체)제2조 (상속을 수락하는 자가없는 경우의 유산세)제3조 (증여세의 객체)제3조의1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과세)제3조의2 (유산세 과세)제4조 (용어 정의)제5조 (간주증여[[1]](#footnote-1))제5조의1 (증여세 과세)제5조의2 (증여세를 과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조 (납세의무자－유산세)제7조 (납세의무자－증여세)제8조 (유산·증여세의 보전)제9조 (국경 안과 밖의 재산 인정)제10조 (가치평가 원칙)제10조의1 (유산세 가치계산)제10조의2 (증여세 가치계산)제11조 (국외재산의 유산세와 증여세 공제)제12조 (화폐 단위)제12조의1 (금액 항목)1. **유산세 계산**

제13조 (세율)제14조 (유산총액 범위)제15조 (간주재산)제16조 (유산총액 불산입)제16조의1 (유산총액 불산입)(추가)제17조 (공제액)제17조의1 (배우자 잉여재산차액분배 청구권)제18조 (면세액)1. **증여세 계산**

제19조 (세율)제20조 (증여총액 불산입)제20조의1 (증여총액 재산의 불산입)제21조 (공제액)제22조 (면세액)1. **조사·징수 절차**

제1절 신고 및 납세제23조 (유산세 신고)제24조 (증여세 신고)제24조의1 (신탁계약일을 증여행위 발생일로 인정·변경)제25조 (통합 신고)제26조 (신고기한 연장)제27조 (삭제)제28조 (통지·신고)제29조 (조사·평가)제30조 (기한연장 또는 분기납세)제31조 (삭제)제32조 (삭제)제33조 (미신고에 대한 조사·사정)제2절 삭제제34조 (삭제)제35조 (삭제)제36조 (삭제)제3절 자료조사와 통보제37조 (사망 통보)제38조 (삭제)제39조 (수색·압류)제40조 (회동 후 점검·등록)제41조 (증명서 발급)제41조의1 (양도 동의 증명서)제42조 (양도 등기 시 증명서 동봉 통지)1. **상벌**

제43조 (적발에 대한 포상금)제44조 (기한내 미신고에 대한 처벌)제45조 (신고 누락에 대한 처벌)제46조 (고의·사기 탈세에 대한 처벌)제47조 (벌금의 제한)제48조 (호적조사·징수담당자의 위법에 대한 처벌)제49조 (삭제)제50조 (세전 유산분할 등에 대한 형사책임)제51조 (기한경과 납세에 대한 처벌)제52조 (미검증 수리에 대한 처벌)제53조 (삭제)1. **부칙**

제54조 (삭제)제55조 (시행세칙)제56조 (작성 서식의 제정)제57조 (삭제)제58조 (보충법)제58조의1 (세수실질손실)제58조의2 (장기요양서비스 불입 과세수입에 대한 특별기금)제59조 (시행일) |

1. 간주증여: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증여와 유사함이 있어 증여로 간주하는 것. 증여의제(贈與擬制)라고도 한다. [↑](#footnote-ref-1)